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 지 영**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가 가지는 심각성을 실증하고,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의 심각성은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의 고찰 및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7년에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과 범죄경력 조사결과를 통해 실증하였다.

조사결과 가족내 성폭력은 친·의부, 어머니의 동거남과 같은 미성년의 양육을 책임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피해자 연령이 비친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어리고, 범죄의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그 피해가 비친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는 보다 엄중하고 일관된 양형이 필요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지원이 요구되며, 친권을 제한하거나,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는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집행도 아울러 필요하다.

❖ 주제어 : 친족내 성범죄, 아동, 청소년

* 이 연구는 2008년도 보건복지부과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주체와 동향분석’에서 지원되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I. 들어가는 말

2008년 11월에 있었던 청주지방법원의 한 판결은 가족내 성폭행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주지방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를 7년 동안 성폭행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¹⁾ 법원은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점, 한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청주지법의 판결처럼, ‘피해자 양육’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판례가 여럿 있었다. 예를 들어 2006년엔 10살 처조카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10년 동안 부양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으며, 같은 해 10살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부양”을 들어 낮은 징역형을 내린 판결도 있었다.²⁾ 법률에서는 친족간의 강간을 실행 5년 이상, 강제추행은 실행 3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판결은 법정 형량보다 훨씬 낮게 선고될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가족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일한 인식과 피해자를 가해자의 보호아래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격리, 치료 등의 조치 없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성폭력 범죄자의 상습성과 폐쇄적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피해화는 자명한 일인 것이다.

이중적 성규범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비해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가족내 성폭력의 문제는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전반이 가지는 문제에 더해 혈연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욱 어려운 범죄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센터들이 생겨나고, 성폭력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산출되었지만, 친족에 의한 미성년 성폭력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와

1) 한겨레 신문. 2008년 11월 24일자

2) 한겨레 신문. 2008년 12월 4일자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관계, 범죄의 지속성 등 여타의 성범죄와 별개로 연구되어야 할 특성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가 가지는 심각성을 실증하고,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의 심각성은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의 고찰 및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7년에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과 범죄경력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³⁾.

가족내 성폭력은 친·의부, 어머니의 동거남과 같은 미성년의 양육을 책임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의 계층과 직업이 다양하며, 피해자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범죄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여타의 성범죄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가해자 처벌은 경미하며, 더욱이 큰 문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재피해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한국사회 가족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실증하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

1. 범죄유형에 나타난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의 심각성

1991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접수된 친족성폭력상담사례는 전체 상담 1,260건 중에서 210건으로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친의부에 의한 피해가 57.4%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자는 전부 여아였다(한국성폭력상담소,

3) 친족간 성폭력범죄에서 친족의 법률상 의미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친부, 의부, 오빠, 삼촌, 사촌오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기록조사에서는 어머니의 동거남도 미성년자의 의붓아버지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본고에서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와 가족내 성폭력범죄를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1996b). 기록조사결과도 이와 비슷하였는데, 2007년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총 1,839명의 성범죄자 중에서 141명⁴⁾이 친족에 대한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에서 약 13%의 비율을 차지한다. 죄명별로 비친족관계의 범죄와 비교해 보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간(84건, 21.8%)과 강제추행(8.7%, 56명)이고 나머지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는 성매수에서 1건(0.1%)만이 있었다. 친족관계 성범죄의 죄명을 비친족관계와 비교하면 비친족관계에서 일어난 성범죄보다 강간의 비율(친족 60%, 비친족 33.9%)은 높고 강제추행의 비율(친족 40%, 비친족 66.1%)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친족관계여부별 죄명

	강간	강제추행	계
친족관계	84(60.0)	56(40.0)	140(100.0)
비친족관계	301(33.9)	587(66.1)	888(100.0)
계	385(37.5)	643(62.5)	1028(100.0)

$\chi^2=35.177^{***}$ *** $p<.001$

2.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의 일상성

아동이나 청소년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사람들에 관해 일반인들은 몇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가해자들이 높고 추하여 정상적인 성인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에 대한 성적기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Check, 1989).

4) 기록조사는 2007년 한해 동안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판결문과 전과 경력조회표를 분석하였다. 2007년 한해동안 미성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39명이었으며, 그중 친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모두 141명이었다. 고모부가 미성년인 조카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간과 강제추행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본문에서는 성매매 1건을 제외하고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 140건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록조사는 경찰 행정학과, 법학과, 교정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15명이 하루 동안 조사에 대한 사전교육 및 예비조사를 받은 후, 열흘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통해 넘어온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13세미만 강간, 강간미수 등의 강간관련 구체적 범죄들은 모두 강간에, 강제추행 및 상해,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강제추행관련 구체적 범죄들은 모두 강제추행에 포함시켰다.

미국에서도 친족 성폭력이 노동계층과 중산계층, 도시와 농촌, 부유한 교외 지역 등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된 것은 60년대에 이르러서라고 한다(김연옥, 박혜영 역, 1995) 국내에서는 9살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김진관 사건(1992년 1월 17일)이 발생하면서 극소수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정신병리적 현상으로만 치부되었던 친족 성폭력 사건이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친족성폭력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족 안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직자나 하층계급의 남성으로 성적 파트너인 여성이 죽었거나 가출하여 성적욕구가 봉쇄되었고, 실직과 같은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 때문에 동거하는 자녀를 강간하는 가해자들도 있으나(강은영 2000),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일삼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 친족 성폭력이 노동 계층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친족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화(myth)라는 것이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여성학자인 Driver(1989)는 지배계급의 남성들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러한 신화를 만들어 전파했다고 주장한다(Emily Driver, 1989). 현대 산업사회에서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는 성적 서비스, 가사노동을 담당하는데, 아내가 어떤 이유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딸에게 모든 서비스를 기대하게 된다. 즉 가족내 성폭력은 고정화된 성역할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계층과 직업을 특정지을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Sanford, 1980). 기록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록조사에 나타난 가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친족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에서는 40대가 절반 이상인 5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가 23.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 번째는 50대로 모두 14.3%를 차지하였다. 즉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의 연령은 30대에서 5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친족 성폭력범죄와 비교해보면 비친족 성범죄자들은 20대와 30대, 40대의 비율이 24%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50대와 60대가 각각 15%와 9.6%, 70대가 1.6%로 나타났다. 이중 20대와 70대의 경우, 친족관계에서는 각각 3명(2.1%)과 ‘전혀 없음’으로 나타나 비친족 성폭력범죄자의 연령특성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친족관계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들이 주로 친·의부이거나

미성년을 보호하는 관계에 있는 남성들인 때문으로 짐작된다.⁵⁾

〈표 2〉 친족관계여부별 가해자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친족관계	-	3 (2,1)	33 (23,6)	81 (57,9)	20 (14,3)	3 (2,1)	-	140 (100,0)
비친족관계	1 (0,1)	210 (23,6)	220 (24,8)	225 (25,3)	133 (15,0)	85 (9,6)	14 (1,6)	888 (100,0)
계	1 (0,1)	213 (20,7)	253 (24,6)	306 (29,8)	153 (14,9)	88 (8,6)	14 (1,4)	1028 (100,0)

$\chi^2=80,230^{***}$ *** $p<.001$

또한 친족관계에서 미성년을 성폭행한 사람들의 직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 사무직비율이 비친족관계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친족 21.5%, 비친족 16.8%). 즉 가족내 성범죄가 노동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취업자도 24.5%로 비친족관계(35.6%)보다 적었다(표3 참조).

〈표 3〉 친족관계여부별 직업유형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어업직	생산직	미취업	계
친족관계	11 (7,9)	2 (1,4)	17 (12,2)	9 (6,5)	8 (5,8)	6 (4,3)	52 (37,4)	34 (24,5)	139 (100,0)
비친족 관계	53 (6,0)	8 (0,9)	87 (9,9)	46 (5,2)	126 (14,3)	25 (2,8)	224 (25,4)	314 (35,6)	883 (100,0)
계	64 (6,3)	10 (1,0)	104 (10,2)	55 (5,4)	134 (13,1)	31 (3,0)	276 (27,0)	348 (34,1)	1022 (100,0)

$\chi^2=20,381^{**}$ *** $p<.01$

이러한 연령별 직업별 특성 이외에 가해남성들의 전과기록에 관해 살펴보면 전과가

5) 기록조사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82.8%가 친부(42.1%), 의부(26.4%), 모의 동거인(14.3%)으로 나타났다. 이의 가해자로 친오빠, 삼촌 등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족내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성이 저지르는 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전혀 없는 사람은 19.3%이며 나머지 80.7%의 가해자들은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친족성폭행 가해자들은 비친족 가해자들에 비해 전과자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전과 유형에서 보면 친족대상 미성년 성범죄에서는 이중전과만 가진 경우가 67.1%로 비친족의 경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동종전과의 비율만 놓고 보면 모두 13.6%의 친족 성범죄자들이 이전에 성범죄로 체포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친족 성범죄자 동종전과 18.3%보다 조금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미성년 성범죄가 단 한번에 발각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들의 동종전과 비율이 비친족관계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4〉 친족관계여부별 전과유형

	전과없음	이중전과	동종전과	이중+동종 전과	계
친족관계	27(19.3)	94(67.1)	4(2.9)	15(10.7)	140(100.0)
비친족관계	272(30.6)	454(51.1)	29(3.3)	133(15.0)	888(100.0)
계	299(29.1)	548(53.3)	33(3.2)	148(14.4)	1028(100.0)

$\chi^2=12.761^{**}$ $^{**}p<.01$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전과횟수를 살펴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 7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회, 3회가 각각 4명과 1명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 5〉 친족관계여부별 동종전과횟수

	1회	2회	3회	4회	계
친족관계	14(73.7)	4(21.1)	1(5.3)	-	19(100.0)
비친족관계	115(71.0)	31(19.1)	13(8.0)	3(1.9)	162(100.0)
계	129(71.3)	35(19.3)	14(7.7)	3(1.7)	181(100.0)

$\chi^2=.569$ $p=n.s.$

6) 이중전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이나 향균법위반 등의 경미한 전과기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3. 성폭력에 수반되는 방임과 신체적 폭력

가부장적 사회가 계층을 막론하고 미성년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면, 역기능적 가족환경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싸고 범죄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Groth(1985)에 의하면 친족 성폭력이 발생하는 가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수동-의존적 유형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주로 의존하면서 아동처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아내로부터 이러한 욕구가 지지받지 못하여 점차 방임·유기되었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딸에게서 정서적 지지와 충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 딸이 자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주고 세탁을 해주는 등 자신을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게되는 것이다.

〈사례 4-7〉

가해자: 친부(50대 회사원), 이웃아저씨, 이웃아저씨 아들, 사촌오빠, 조부

피해자: 여(만 11세)

학대형태: 성기삽입, 신체적 학대, 방임

아동의 어머니는 무당으로 자주 아동을 구타할 뿐 아니라 아동을 전혀 돌봐주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은 1996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못해 수 개념도 없는 상태이다. 어머니가 자주 외출하여 아동은 어릴 때부터 가사일을 도맡아 하였으며, 나이에 비해 매우 어른스럽고 성숙해보인다. 아동은 8세때부터 여러 해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해 거의 아버지의 sex partner로 생활해 왔으며,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집에 갔다가 강간을 당해 피를 흘리고 돌아온 적도 있고, 그후 그 아저씨의 아들로부터도 강간을 당했으며, 할아버지로부터도 심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강은영, 2000).

수동-의존적 가족유형에서 피해자들은 보호자로부터 방임과 성적학대를 동시에 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또 다른 가족 유형은 공격적-지배적 유형이다. 남편은 가족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

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 이 유형의 남편은 불완전하거나 미성숙한 여성을 배우자로 택하므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남편은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내의 무력감과 의존성을 조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특성을 지닌 아내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은 딸에게서 정서적 욕구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가해자에게 있어 딸과의 성적 관계는 가장으로서의 자기도취적인 권리로 경험되어진다고 한다(Groth, 1985). 이러한 가해자들은 성폭력과 가족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동시에 행사하는데, 실제로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의 절반이상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었으며, 미성년에 대한 성학대에는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Kellogg & Menard 2003).

아빠가 나에게 처음으로 강간했을 때, 내눈이 ‘번쩍’하도록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 이후로 반항하면 구둣발로 내 얼굴을 짓이기고, 기절하도록 두들겨패고, 각목으로 때리고 벗은 몸을 채찍질하듯 때리고..... 현혜순(1998)

4.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의 지속성과 저연령의 피해자들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가 여타 성범죄보다 심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성범죄가 일회에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둘째, 피해자의 연령이 가족밖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어리다는 점이다.

친족성폭력 가해자들은 미성년과의 성관계가 주는 편안함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집착하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미성년이 요구하는 것은 적고, 순응적이기 때문에 성인 여성보다 성적 파트너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동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지속적으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만 머무르도록 강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한다. 이러한 통제는 피해자를 가족안에서조차 고립되게 만든다. 피해자는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하소연할 수 없다는 고독과 외로움속에 남겨진다(Sgroi, Frances & Blick, 1985).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다른 가족이나 외부에 알리지 못하

게 되어 친족 성폭력은 비친족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상담소나 보호소에 들어온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얼마나 동거가족조차 이러한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경우가 많다(안옥희 2000).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에게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아빠가 나한테하는 행동이요. 엄마하고나 하는건데 나한테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당하는 거니까 죄스럽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가 그냥 엄마한테 잘못하고 있는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기하기전... 엄마한테 얘기하기전까지(안옥희 2000).

오빠한테 막 얘기를 할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하기가 창피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말하는 거.... 이런저런 얘기가 그니까 얘기하는 자체가 싫어요(안옥희 2000).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7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 중에서 친족관계 성범죄자의 범행지속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친족 관계에서는 1회에 그친 경우가 81.1%에 이르나, 친족관계에서는 일회 범행이 29.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1년 이상 범행이 지속된 사례가 비친족관계에서는 2.2%에 지나지 않으나 친족관계에서는 3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참조).

〈표 6〉 친족관계여부별 범행지속여부

	1회에 그침	1개월 이하	1-5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계
친족관계	47(29.6)	12(7.5)	25(15.7)	12(7.5)	63(39.6)	159(100.0)
비친족관계	1064(84.0)	85(6.7)	54(4.3)	35(2.8)	28(2.2)	1266(100.0)
계	1111(78.0)	97(6.8)	79(5.5)	47(3.3)	91(6.4)	1425(100.0)

$\chi^2=406.766^{***}$ *** $p<.001$

피해자 연령이 비친족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어리다는 점도 친족내 성폭력범죄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아래의 〈표 7〉을 보면 7세미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친족관계와 비친족관계의 비율이 각각 4.4%와 7.2%로 비친족관계의 비율이 조금 높으나 16세 이상 피해자의 비율을 보면 비친족관계의 피해자들이 24.2%로 친족내 피해자 비율(1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족성범죄 피해자들은 비친족 피해자들보다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보다 친족관계 피해자에서 7세미만 청소년의 비율이 적다고 나타난 결과도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일회에 발각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7〉 친족관계여부별 피해자연령

	7세미만	7세이상-13세미만	13세이상-16세미만	16세이상	계
친족관계	7(4.4)	69(43.1)	59(36.9)	25(15.6)	160(100.0)
비친족관계	91(7.2)	589(46.5)	281(22.2)	306(24.2)	1267(100.0)
계	98(6.9)	658(46.1)	340(23.8)	331(23.2)	1427(100.0)

$\chi^2=19.309^{***}$ *** $p<.001$

5. 성폭행의 피해 결과-신체 이상과 심리적 고통, 모친과의 불화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은 유·아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에 의한 무리한 성기 삽입이나 이물질 삽입은 질이 늘어나거나 음핵이 비대해지는 등의 성기 이상을 유발하고, 초등학교년부터 임신, 낙태, 출산을 경험하게 되면 이후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폭행에 더해 구타 등의 신체적 학대로 요통이나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다. 신체적 후유증 이외에, 피해자들은 심리적 후유증으로 불안감, 우울감, 위축감,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 죄의식, 낮은 자존감, 순결 상실감에 시달린다. 특히 ‘손상된 물건 증후군’으로 불리는 순결상실감은 자신을 다른 여성들보다 성적으로 무가치해졌을 뿐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보게된다(Sgroi, 1982).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자살시도나, 절도, 가출, 무단결석 등의 자기파괴적 행동을 하거나(현혜순, 1997), 원치 않는 성접촉을 거절하지 못하고, 성적 접촉시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하는 자기손해적 성행동을 하게 된다(권희경, 장재홍, 2003). 즉 피해자들은 일상의 가장 소중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과의 친밀감, 성관계에서 평생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사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듯이 어린 아동들은 가해자에게 오히려 의존하고, 가해자의 성적 학대를 애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강은영 2000), 실제 아동들은 성관계나 성적놀이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이 청소년이 된 후, 성행위

를 강제한 가해자의 책임보다 자신이 느낀 패감을 더 의식하게 되어 자신도 공범이라는 자책에 빠지고 이로 인해 이성을 기피하거나, 성행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현혜순, 1997).

가족내 성범죄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자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모친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는 경우이다. De jong(1988)에 따르면 성적학대를 당한 아동이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어머니나 주위 어른들의 30% 이상이 아동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학대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31%인 것으로 나타났다(Kellogg, & Huston, 1995)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너무 ‘니가 잘못된 거야’라는 사실을 주입시켜놨기 때문에 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된거야. 너 때문에 이런거야, 너 때문에 이혼할 분위기가 생긴거고 예전에는 그래도 행복했던 어느 정도 평범한 가정인데, 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거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이라는 생각을 너무 주입시켜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그런 죄의식을 느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해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잘못된 거야. (이어진, 2007)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의 성학대를 방임하거나 자녀를 남편의 애정에 대한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성폭력 못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Ⅲ.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

1.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친족간의 강간은 실형 5년 이상, 강제추행은 실형 3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실형,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이나 이물질 삽입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양형은 일관되지 못하고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2007년의 판결기록을 보면 집행유예만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와 다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가 총 24.3%로 나타났다(표8 참조).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5년 미만인 자가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표 2〉에서 친족성폭력 강간이 60%인 점,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가 47.5%인 점(표7 참조)을 감안하면 유기형량이 법정형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9 참조).

〈표 8〉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유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집행유예	집행유예+ 그 외	치료감호	벌금	소년 보호사건	계
친족관계	-	106(75.7)	27(19.3)	7(5.0)	-	-	-	140(100.0)
비친족 관계	8(0.9)	347(39.1)	271(30.5)	95(10.7)	1(0.1)	159(17.9)	7(0.8)	888(100.0)
계	8(0.8)	453(44.1)	298(29.0)	102(9.9)	1(0.1)	159(15.5)	7(0.7)	1028(100.0)

$\chi^2=73.649^{***}$ *** $p<.001$

〈표 9〉 친족관계여부별 실형재분류

	1년미만	1년에서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계
친족관계	3(2.8)	70(66.0)	33(31.1)	-	106(100.0)
비친족관계	49(13.8)	229(64.5)	48(13.5)	29(8.2)	355(100.0)
계	52(11.3)	299(64.9)	81(17.6)	29(6.3)	461(100.0)

$\chi^2=31.810^{***}$ *** $p<.001$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이처럼 경미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친족내 성폭력 가해자의 정상성 때문이다. 즉 절도나 강도 등의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양육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간하고 추행하는 남성은 ‘평균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면한 근로자이며 다른 범죄기록이 없는’ 모범적인 사회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미할 수 밖에 없다(Viinikka, 1989) 실제 미국에서 아동성범죄로 기소된 남성들이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 조사한 결과, 그들이 소수민족이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노동자 계급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사실도 있다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zeng, Robinson, & Karlson, 1999). 즉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서 아동성학대가 일어난다는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을 비껴간 다수의 가해자에게 경한 처벌을 내리게 하고, 처분결과는 반대로 가족내 성학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가해자 감형의 중요한 이유가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는 것 이외에 가족의 보호, 피해자 양육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와 다시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은 어떤 범죄 피해자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가혹한 상황이다. 일단 발생한 성범죄를 없었던 일로 덮어두고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법이 너무 쉽게 가해자를 풀어주는 것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5년 4월 플로리다주 하원이 12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범의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못박는 ‘제시가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도 ‘성 약탈자법(Sexual Predator Law)’이라 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출소후에도 전자팔찌제도를 재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안명옥 2005). 이는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에 있어 관대한 한국의 현실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아동성폭행의 경우, 아동의 성기와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구강성교,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추행이 많다. 이는 어린 아동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질구 및 자궁경부가 좁기 때문에 삽입이 어려워 일어나는 추행인 것이다.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신의진 2005).

2.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남성들은 자신의 행동이 외부로 발각되는 경우,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피해자와 아내에 대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려 하거나,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듯 하지만 ‘애정의 표현’이라는 변명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다(Herman, 1981). 반면 피해자들 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대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대와 달리 재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 기가 차 죽겠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딸한테 강제로 그렇게할 생각을 해요? 내가 막 뿌리치고 그랬거든요. 막 집을 나갈꺼라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고. 딸한테.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는게, 너거 엄마보다 이쁘다면서 이라는 거예요. 와~ 딱 그 말 듣고.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완전 욕하고 싶었어요. 미쳤구나! 나는 내가 나한테 더 배신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진짜 내가 더 배신이 느껴지는 어예요. 와~ 막 그라드만 이제 (기가찬 듯 웃음) 나한테 그 순간만 내가 딸로 안보이고 여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느껴졌데요. 그 사이만(이어진 2007).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내 성범죄자들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양육과 혈연관계의 유지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재피해의 위험에서 보호되어야 할 미성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 나타난 피해자는 언니와 함께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머니는 피해자가 10살이 되던 해 사망하고, 동생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된 언니가 부를 고소하여 부는 실형 3년을 언도 받고 가족은 해체되었다. 혈연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언니도 멀어지고 시설에 머무는 것도 여의치 않아 의지할 곳이 없던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인 아버지와 한집에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영구격리요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하다.

미국에서는 가족내 아동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떠나게 된다(Furniss, 1991). 즉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되지 않는 한은 피해자가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집을 나와야만 분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김영서 200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의하면 임시조치로 가정폭력행위자는 ① 최대 2개월 또는 6개월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행에 관해서는 이러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기간을 명시하여 가해부모가 강제격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제한 청구를 일정한 기간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이호균 2004). 이러한 가해자의 격리는 일차적으로 가해자가 가정을 떠나는 방향으로 하고 피해자는 가정에 남아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모친이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친의 질환이나 어떤 성향이 피해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⁷⁾ 제12조에는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13조에는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은 아직도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개념이 강해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행정당국이 나서서 친권을 박탈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또한 친권과 후견인에 관한 법적 절차가 변호사 선임에 의한 가사사건으로 처

7)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다. 때문에 여기서 아동은 본고에서 언급된 미성년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리되므로 비용의 문제도 있어 법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이호균 2006). 우리나라의 정서상 친권상실까지 처분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권상실보다는 친권의 제한조치가 용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좀더 쉬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친권제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친권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들도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긴급히 친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는 검사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일정한 심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어 친권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친권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친권을 포기할 경우, 다시 회복할 때에는 친권자의 임의대로 맡겨서는 안되고,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심사위원회 등이 성폭행을 가한 친권자에게 아동을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한 연후에 회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친권상실이던 친권 제한이던 전제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입양법을 제정하여 영구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위탁가정이라는 일시적인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입양가족을 찾아주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입양에 대한 거부감으로 말미암아 시설 보호 이외의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김학자, 2008). 때문에 가정에 남은 구성원들이 가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직업이 있다면 가정밖에서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이외의 보호자가 없거나, 다른 가족과의 갈등이 극심하여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의 학습권과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시설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IV. 결 론

친부나 의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들의 가장 큰 피해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성장한 다음 그들이 느끼는 우울과 좌절은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하는 대상이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기만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만약 다른 구성원들이 피해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거나 가해자의 죄과를 묻지 않는다면, 이들은 가정 밖으로 뿔뿔이가 어머니나 동기와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어 가족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본문에 나온 선행연구와 기록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사회의 가족내 미성년 성범죄는 발생율이나 범죄행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형량은 낮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미비하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사법 체계가 가족내 성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현실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은 사법당국의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가해자 격리가 아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친·양자를 성폭행한 순간부터 이미 가정은 해체된 것이다.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에 있어 우리 사회는 가정수호의 가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법집행까지 필요하고, 오랜 기간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회가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재정적 지원, 세심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희경, 장재홍(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8권 1호 35-47.
- 강은영(2000)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연옥, 박혜영 역(1995) 성학대 피해아동과 청소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의학사.
- 김영서(2001) 친족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위기개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학자(2008)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분석과 입법·제도적 대책, 제57권 1호 113-168.
- 신의진(2004)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 방안. 아동·성폭력 대상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안명옥(2005)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안- 안명옥 의원실.
- 안옥희(2000) 친족성폭력 피해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어진(2007) 친족성폭력피해자의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호균(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사회복지 법인 굿네이 버스 2004.
- 이호균(2006)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제1호. 163-192.
- 한국성폭력상담소(1996b)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 현혜순(1997) 친족성폭력의 피해자 후유증에 관한 연구 -5명의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 증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 Check, W. A.(1989), Child Abuse, Chelsea House Publishers, Publishers, New York.
- De jong, A. R.(1988). Maternal responses to the sexual abuse of their children Pediatrics, 81, 14-21.
- Driver, E.(1989).The traditional western mythology of child sexual abuse, Child Sexual Abuse Feminist Perspective. Driver, E., & Droisen, A.(Eds).

- Finkelhor(1984).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The Free Press. New York.
- Furniss, T.(1991). The Multi-Professional handbook of child sexual abuse. Routledge. New York.
- Groth, C.(1985) Incest Offender, D. C. Heathe and Company.
- Herman, J. L.(1981). Father-daughter incest. Havard University Press. MA.
- Kellogg, N. D., & Huston, R. L(1995). Unwanted sexual experiences in adolescence: Patterns of disclosure. Clinical Pediatrics, 34(6), 306-312.
- Kellogg, N. D., & Menard, S. W.(2003). Violence among family memb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valuated for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7. 1367-1376.
- Sanford, L.(1980) Sanford Linda Tschirhart(1980) The Silent Children, Newyork: Anchor Press/Double Garde City.
- Sgroi S. M., Frances S. P., & Blick, L. C.(1985) Validation of Child Sexual Abuse, In Sgroi(ed),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 inchild Sexual Abuse, D. C. Heathe and Company.
- Sgroi, S. M.(1982) A Conceptual framework for Child Sexual Abuse. Lexington Books.
- Tzeng, O. C. S., Robinson, R. L., & Karlson, H. C(1999) Demographic Correlates and Judicial Determinations of child Sexual Abuse Offenses.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Vol. 8(2), 55-77.
- Viinikka S.(1989). The traditional western mythology of child sexual abuse, Child Sexual Abuse Feminist Perspective. Emily Driver & Audrey Droisen(eds).

Sex Crime in Family Members and Legal Alternatives for the Victims

Kim, Ji-Young^{*}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1) prove the severity of sexual violence crime among family memb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n society and (2) suggest the legal correspondence. Accordingly, a review for the related literatures and previous studies, and a survey of criminal records and archival files of sentence for the criminal of that kind were performed for this study.

In general, domestic sexual violence was highly likely to be occurred by in-home males such as children's own father, stepfather, and cohabitants with mother who used to care childre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ge of victims was relatively younger than that of victims of sexual crime among non-blood family members. In addition, the damage of victims was severer than that of other sexual crime because the continuity of crime occurrence was high. Thus, the punishment for the criminals should be strong and assesment of a case should be consistent. Sexually abused childre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criminals and cared delicately at the various supporting institute. Parental authority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should be limited and even deprived by the legal authority.

❖ Keywords : Domestic sexual violence, Child, Adolescent

투고일 : 2009. 2. 11 / 심사(수정)일 : 2009. 2. 23 / 게재확정일 : 2009. 2. 27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Law